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12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17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10월 15일, 김기덕 의원 외 28명
- 나. 회부일자: 2021년 10월 20일
- 다. 상정일자: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8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12월 17일 상정·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김기덕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제시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3조제9호).
 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“에너지공동체”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7호 중 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”를 “수급권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에너지의”를 “인하여 에너지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“에너지공동체”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·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,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교육·홍보의”를 “교육·홍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에너지계획”을 “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”을 “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추진사항”을 “추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에너지이용”을 “그 밖에 에너지이용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지속 가능한”을 “지속가능한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제반”을 “모든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속 가능한”을 “지속가능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개보수시”를 “개보수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”를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품을,”을 “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을 보다”를 “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보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만드는”을 “만든”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의 변동으로”를 “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하여”로, “기하기”를 “도모하기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를”을 “각 호의 사항을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자에 대하여”를 “자를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에너지 백서”를 각각 “에너지백서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“에너지취약계층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</u>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.</p> <p>8. “에너지복지”란 경제적인 이유로 등으로 <u>에너지의</u>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.</p> <p>9. “에너지공동체”란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<u>에너지공동체</u>를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시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,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, <u>교육·홍보의</u> 강화 및 연구·개발·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8조(에너지계획)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「에너지법」</p>	<p>제3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수급권자</u> ----- -----.</p> <p>8. ----- -- <u>인하여 에너지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9. “에너지공동체”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<u>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·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,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</u>를 말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시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교육·홍보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에너지계획) ① ----- ----- -----</p>

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너지계획 (이하 “에너지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~ 6. (생략)
- 7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
- 8. (생략)

③ (생략)

제9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
- 2. ~ 3. (생략)
- 4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생략)

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

② -----

-----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-----
-----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-----

- 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- 1. -----

----- 추진에 관한 사항
- 2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그 밖에 에너지이용 -----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) ① ~ ② (생략)

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.

제12조(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) ① ~ ② (생략)

③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의한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④ ~ ⑦ (생략)

제13조(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)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의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

2. ~ 5. (생략)

제14조(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)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,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제11조(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지속가능한 -----

-----.

제12조(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위하여 -----
----- 대해 -----
----- 따른 -----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) ---

-----.

1. -----

----- 모든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) ① -

----- 지속가능한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「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사용

3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2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, 가로등, 보안등, 터널등(지하차도등 포함)은 「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15조(에너지원단위 설정) ①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및 건축물(신축 및 기존 건축물 포함)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6조(에너지사용 제한) 시장은 국내외 에너지 사용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

2. ----- 개보수시 -----

3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-----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, -----
-----.

④ -----
-----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보다 -----
-----.

제15조(에너지원단위 설정) ① -----
----- 만든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에너지사용 제한) -----
----- 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하여 -----
----- 도모하기 -----

범위 안에서 사업자 또는 에너지사용
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다
음 각 호의 조치를 산업통상자원부장
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8조(신·재생에너지 시범지구) ①
(생략)

② 제1항의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신
· 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
다.

1. ~ 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9조(공유재산 임대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
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
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「지방
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
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
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
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
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
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.

제20조(의견청취) 시장은 제19조제2항에
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
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
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
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·동결하거
나 전년도(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
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) 소비자
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
그렇지 아니한다.

범위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신·재생에너지 시범지구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공유재산 임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

-----.

제20조(의견청취) -----

그렇지 않다.

제22조(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24조(에너지 교육, 홍보 및 포상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확대,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25조(에너지백서)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28조(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)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·재생에너지 등의 개발·이용·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22조(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각 호의 사항을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에너지 교육, 홍보 및 포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자
를 -----.

제25조(에너지백서) ① -----

----- 에너지백서 -----.

② ----- 에너지백서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) ① -----

----- 마련 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